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
----------	-----

2019. 10. 25.(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7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저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사항 규정(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의 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하였음.
 -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30년도까지 매장 내 1회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비닐봉투 사용금지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빨대, 컵뚜껑 등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려는 계획임.

-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분위기를 확산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도민의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줄이고 홍보하여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안 제2조는 ‘1회용품’, ‘다회용품’, ‘공공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책임성을 부여하였음.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권장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들의 능동적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입법예고('19. 9. 24.~'19. 10. 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등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을 주도적으로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를 통하여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충청북도의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

여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 1회용품 사용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등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환경우수업소 현판 및 지정서 제작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환경우수업소 선정 : 연1회, 10개소 지정계획
- 교육·홍보사업 추진 : 교육 - 연1회실시, 홍보 - 반기1회 보도자료 제공 정기 홍보, 시·군 홍보지 활용 및 반상회보 활용 수시홍보

나. 추계 결과

- 환경우수업소 선정 : 15,000천원(5년) 소요(현판 및 지정서)
- 교육·홍보사업 추진 : 10,000천원(5년)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환경우수업소 선정 : 도비100%(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 교육·홍보사업 추진 : 도비100%(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5	5	5	5	5	25
환경우수업소지정	3	3	3	3	3	15
교육.홍보사업	2	2	2	2	2	10
재원 조달	5	5	5	5	5	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재원	소 계	5	5	5	5	25
	환경우수업소 지정	3	3	3	3	15
	교육.홍보사업	2	2	2	2	1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